

수원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가단5020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2.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종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건축공사를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C」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하는 자로 채권자가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설비를 담당하여 공사하였던 자입니다.

2. 채무자의 공사대금 대리수령

가. 채권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하여 왔고, 2018. 5.경 신청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이 44,000,000원(부가세포함)인 「E」빌딩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채권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채무자의 상호를 차용하게 되었고, 신청외 「D」는 2018. 6. 21. 위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사업자를 이용하라고 권유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신청외 「D」로부터 송금 받는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신청외 「D」에게 채무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횡령행위

가. 채무자는 신청외 「D」로부터 송금 받은 위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환해 주지 않다가 임의대로 모두 사용하여 소비하였습니다.

나. 채무자는 처음부터 위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공사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외 「D」로부터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